

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8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2. 27. 최두임 의원 등 8인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01. 03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01. 14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김원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농어업작업 ”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- 예방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,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59호
 - 예고기간: 2024. 12. 27.(금) ~ 2025. 1. 2.(목)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성군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(안 제1조 ~ 제2조) 목적 및 정의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,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연관 상위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규정함.

- (안 제3조) 군수의 책무

-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.

- (안 제4조) 적용범위

- 조례의 적용대상을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고성군 관내에서 농어업 작업을 하는 농어업인, 농어업법인, 농어업근로자로 규정함.

- (안 제6조) 예방지원계획

-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예방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예방지원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.

- (안 제7조) 예방지원사업

-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.

- (안 제8조) 예방교육

-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효율적인 교육 시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- (안 제9조 ~ 제10조)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

- 예방지원사업(안 제7조) 및 예방교육(안 제8조)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와,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농어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,
- 농어업 생산인구의 고령화, 농어업 관련 장비 확대 등으로 인해 점차 농어업 작업 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안전재해 예방 및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. 14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